외국인요양보호사양성전담학과운영규정 5-1-77

규정번호 5-1-77
제정일자 2025.12.1
최근개정 2026.7.20
개정차수 3차
관리부서 유학생지원팀

[전면개정 2026.7.20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 글로벌 돌봄인력 양성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(이하 “유학생”이라 한다) 대상으로 “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담학과”(이하 “전담학과”라 한다)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과정) ① 우리대학은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의“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”(이하 “양성대학”이라 한다) 지정에 따른 전담학과를 학칙 제23조의19 별표 제9호의 학과명과 학위종류로 설치한다.

② 전담학과는 “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” 사업계획 및 “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”에 준용하여 외국인 정원외 전형에 따른 전담학과 특성에 부합한 별도의 선발기준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.

제3조(유학생 선발 및 입학) ① 글로벌교육센터는“학년도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”및 법무부 “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행 세칙”(이하“양성대학 시행세칙”이라 한다.)을 고려하여 매학년도 전형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통해 입학전형 관리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.

② 전담학과 입학 희망자는 유학생 관련 법무부 지침에 따른 재정능력 및 모집요강의 지원자격을 갖추어 입학원서와 입학서류를 전형일정 이내에 제출하고, 우리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(정원 외) 선발기준 및 선발전형에 따라 선발한다.

③ 입학이 허가된 유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발부받아 비자(사증심사) 발급 및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입학하며, 유학생정보시스템(이하 ‘FIMS’라 한다.)에 등록한다.

④ 입학허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모집요강 및 “양성대학 시행세칙”에 따른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
2. 불법행위 및 허위 입학서류가 발견된 경우
3. 사증불허 및 비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자
4. 학칙 및 제규정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4조(유학생 의무 및 체류관리) ① 유학생은 우리대학 제규정을 준수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

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1. 학적관리 : 입학(출입국), 등록, 휴학, 복학, 자퇴, 제적 및 재입학
2. 교육성과 관리 : 교육 만족도, 자격취득률, 한국어 능력 보유율, 출석률
3. 유학생 출입국 및 체류 관리 : 사증발급 및 비자, 외국인 등록, 시간제 취업 및 변동신고

② 전담학과는 유학생의 학적, 출결, 성적, 중도이탈 등 학생관리 현황 변동사항 발생 시 유학생지원센터에 안내하고,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.

③ 유학생의 체류관리는 유학생지원센터에서 법무부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FIMS를 활용하여 총괄하며, 학적 변동사항 발생시 기한내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) ① 전담학과는“노인복지법 시행규칙”및“양성대학 시행세칙”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"표준교육과정"을 반영하여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전담학과는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우리대학 교육운영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공, 교양 이수학점, 이론 및 실습과목 시간 비율을 고려하여 교과목에 대하여 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한다.

③ 전담학과 및 관련부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교수학습법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학사운영) ① 전담학과의 학기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운영하되, 집중이수제 및 유연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담학과의 수업설계, 수업 및 강의시간, 출결 및 시험, 성적평가는 우리대학 학사내규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되, 한국어능력 및 전공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수업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.

③ 전담학과의 현장실습은 “노인복지법 시행규칙” 및 “양성대학 시행세칙”을 준수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8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.

제7조(조기적응 및 취업지원) ① 전담학과 및 관련부서는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 및 중도탈락 예방을 위하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위하여 지역사회 요양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진로 지도 및 취업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취업지원 :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과 연계한 취업 정보제공 및 상담 활동을 통한 특정활동(E-7-2) 체류자격 변경 신청
2. 시간제 취업 : 법무부 체류관리 지침의 절차에 따른 주당 25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 허가. 다만, 인증대학 주당 30시간 및 “양성대학 시행세칙”에 따라 성적 및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학생(직전 학기 평균평점 4.0 이상,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등)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취업하는 경우에는 주중 최대 35시간까지 허용할 수 있다.
3. 학기 중 인턴 : “양성대학 시행세칙”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

모두 충족한 학생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하여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.

가. 3학기 이상 이수한 자

나. TOPIK 4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

다.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인 자

제8조(졸업) ① 전담학과 유학생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"표준교육과정"을 이수하고 토픽(TOPIK) 3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.

제9조(교육성과 관리) ① 우리대학은 매학기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점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 자체평가보고서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국제교류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유학생지원센터장, 전담학과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교내·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유학생지원센터는 우리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법무부 자체평가보고서 구성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지표를 중심으로 교육성과를 관리한다.

1. 학생 선발 및 관리 : 불법체류율, 중도이탈률, 충원율, 해외선발비율
2. 교육운영 성과 : 필수교과 이수시간 및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률, 한국어 능력 보유율, 출석률
3. 학생지원 : 기숙사 및 장학금 제공
4. 취업지원 : 시간제 취업 및 취업률

④ 유학생지원센터는 양성대학 운용목표 및 주요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진단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개선사항을 향후 운영계획에 활용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및 법무부 체류관리 지침과 법무부 “양성대학 시행세칙”을 준용한다.

부 칙[전면개정]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